◆ 교육칼럼 ◆

교육의 민주화에 대한 단상

민주주의는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교육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해, 인간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에서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교육의 이념에 관한 규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민주주의의 내용은 모든 교육에 있어서 그 목적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절차나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져 행할 때 민주주의가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것이다.

내용의 민주주의는 교육실행의 민주주의, 교육행정의 민주주의, 교육제도의 민주주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실행의 민주주의는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교육자의 몫이 크겠지만, 교육행정의 민주주의는 교육행정가의 몫이 대부분이다. 또한 교육제도의 민주주의는 정치가와 입법자들의 몫이 크다.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교육자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교육민주주의가 왜 필요한 지, 교육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 지, 교육민주주의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교육자와 교육행정가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 입법자와 정치가들 모두가 반성해 보고 교육민주주의의 미흡한 점들을 돌이켜 볼 시점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정치가들이나 입법자들의 태도는 국가가 은혜적으로 배푸는 국가 정책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학습자의 교육권이 무시되기 일쑤였고, 현장 교육자의 의견이 무시되고, 투명치 못한 행정으로 인한 교육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교육행정들이 횡행했다. 또한 교육제도 역시 입법자들의 정치적 입맛에 따라 정치적 지배대상으로서의 국민을 교육이 아닌 훈련시키려는 의도로 행해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교육의 민주주의가 무시될 때, 아동들의 학습권은 무시되고 위선적인 교육자들의 상술적 대상이 되고 만다.

교육행정이 비민주적일 때 교육현장은 생계유지의 현장이 되거나 입신출세자들이 활개치는 술수의 대상이 되고 만다.

교육제도가 비민주주의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비민주적인 교육풍토에서는 국가의 민주주의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인류공영의 교육이념도 사라지고 만다.

유독히 교육 현장이 정치권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원론적인 교육에 대한 민주주의의 단상이 깊어져 간다.

한승훈 본지 논설위원

지상선언

인사 등 교육비리 근절 계기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이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인사 등 여러 유형에서 이루어지는 비리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일과성이 아닌 유형별 비리에 대해 구체적인 맞춤형 개선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교육계에서의 인사 및 납품 등 각종 비리 척결은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등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동일한 기준과 제도마련이 뒤따를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교과부 대책안이 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만 치중되어 업무성격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의 인사 등 각종 비리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일반직공무원 업무성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형평성 논란도 없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교총은 교원 및 교육공무원 비리는 법령에 의해 반드시 엄중히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상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비리가 교육공무원의 비리 범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공사 비리' 의혹에 따른 검찰의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시설과 압수수색 및 "교육감 만들기" 선거 기획 개입에 따른 해임 처분 등은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의 비리가 아니다.

교육계에서의 비리척결은 합리적 제도 마련과 더불어 교육구성원들의 마음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과부 등 교육행정당국은 이에 따른 세부적 매뉴얼 제작·배포와 각종 연수 내용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번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문직 인사 비리 및 일반직 공무원의 '학교공사 비리'에 따른 논란으로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과 절대다수의 묵묵히 교육에만 전념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사기저하가 나타날까 우려한다. 따라서 부정을 저지른 비리행위자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간의 옥석은 반드시 구분하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더불어 한국교총은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교직사회의 자정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교육법률산책 ◆

교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한 법규정에 관하여

천재민 변호사

E-mail : lawdeo@barunlaw.com

학력
199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8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경력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1999 부산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행정소송 담당)
1999-2000 인터넷무료법률상담홈페이지 '천재민의 법률세상' 운영
2001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공익법무관
2002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2002-현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제 1 회

우리 법은 교원의 신분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을까?

먼저, 헌법이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다소 포괄적이어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보장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헌법은 제31조 제6항에서 다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는 법률에 의하여 보장받아야 함을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말하는 '교원의 지위'란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존경과 교원의 근무조건·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입법자는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헌법상의 정신을 구현한 법률이 바로 '교육기본법'이다. 교육기본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하여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에 대한 평가 역시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은 "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함에 있어서 그 권위가 존중되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하고,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교원지위특별법 제3조).

또한 교원은 현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하는 불체포특권을 누리며,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교원지위특별법 제5조, 제6조).

이처럼 교원의 신분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분야가 교원의 징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 회부터는 교원의 징계 절차 및 징계사유에 관하여 간단히 논하도록 하겠다.

〈다음 호 계속〉

본 기고문 또는 교육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 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